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혜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557
----------	------

발의연월일 : 2026. 2. 27.

발의자 : 강혜순, 문희성, 문기호
이명녀, 박경흠, 김도운
홍영진, 정재환, 안영호
김태욱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25.12.4)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을 반영하여 여비 지급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공무원출장의 합리적이고 투명한 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아울러, 법령 및 관련 규정의 제명·소관 기관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약칭 사용·인용·표기 방식 정비를 통해 자치법규의 체계성과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조항에 사용된 약칭을 삭제하고, 이후 조문에서 약칭을 사용하도록 정비(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중복 조항을 삭제(안 제2조제2항 정비 및 제3항 삭제)
- 다. 상위 규정 준용 조항의 인용·표기 방식·띄어쓰기 정비 및 제명·소관 기관 변경 사항을 반영(안 제6조)
- 라.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표 신설(별표1)

3.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4. 근거법규 :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 및 제29조의2

5. 참고사항

- 가. 조례안 예고: 2026. 2. 20. ~ 2. 26.(6일간) / 의견없음
- 나.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 따로 붙임
-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따로 붙임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을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공무원”을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한도액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6조의 제목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을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소속장관””을 ““소속 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를 ““「공무원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로, “별표 1”은”을 “별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를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로, “기획재정부장관의”를 “기획예산처장관의”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를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별표 1]”을 “별표 1”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를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로, “임기제공무원으로”를 “임기제공무원”으로”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p> <p>① 상시출장을 필요로 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경우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않는다.</p> <p>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 한도액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장</p>	<p>제1조(목적) ----- ----- 지방공무원----- ----- ----- ----- -----</p> <p>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p> <p>① -----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p> <p>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한도액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적용하되, 영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생략)
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
각 “의장”으로 본다.
3. (생략)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
조”는 “「울산광역시 중구 공
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5. ~ 7. (생략)
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
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
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
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

1. (현행과 같음)
2. -----
----- “소속 장관”-----
-----.
3. (현행과 같음)
4. -----
----- “「공무원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 별표”는 -----
-----.
5. ~ 7. (현행과 같음)
8. -----
----- 기획예산처장관과 협
의하여-----
----- 기획예산처
장관의 -----

-----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

9. -- 별표 1 -----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임기제공무원”으로 --.

[별지][별표 1] <신 설>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표(제2조제2항 관련)

구분	지급 대상	지급방법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의장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공무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 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 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 ※ 지급 대상 : 담당업무가 주로 외부에서 수행되며, 해당 업무에 상시적으로 직접 종사하여 출장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공무원에게 지급(담당업무가 주로 내부에서 수행되는 내근 직원에 대해서는 지급 불가)
- ※ 지급액 : 공무 출장 중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출이 불필요하거나, 해당 정액보다 적게 소요 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업무의 특성, 출장 중 경비 발생 여부 및 금액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

근 거 법 규

□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 ①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에는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에 따른 전용 차량 배정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으며, 공무용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장을 하는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21. 11. 30., 2024. 7. 2.>

② 제1항에서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이란 같은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개정 2013. 1. 9.> [전문개정 2010. 11. 10.]

제29조의2(지방자치단체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여비에 관한 특례) 이 영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여비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여비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참 고 자 료

□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 (행정안전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한도액은 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별표 2]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표(제2조제3항 관련)

구분	지급 대상	지급방법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내근 직원 제외)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현장 민원처리 및 이와 유사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지도 등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내근 직원 제외)	
	시설 안전점검 및 긴급보수 등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위생업소 및 보육시설 등의 지도점검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체남세 징수 및 이와 유사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방문 보건진료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 지급대상 : 담당업무가 주로 외부에서 수행되며, 해당 업무에 상시적으로 직접종사하여 출장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공무원에게 지급(담당업무가 주로 내부에서 수행되는 내근 직원에 대해서는 지급 불가)

※ 지급액 : 공무 출장 중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출이 불필요하거나, 해당 정액보다 적게 소요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업무의 특성, 출장 중 경비 발생 여부 및 금액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조례 등의 시행에 따라 의무적·임시적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시행규칙 등 하위규정의 시행에 따라 발생이 예상되는 비용까지 포함하여 실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자료 등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이미 시행되어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3. 비용추계 대상이 보안을 요하는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수 없는 경우
4. 조례 등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미첨부 사유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소 속: 의회사무국
- 직 급: 지방행정주사
- 성 명: 이홍숙
- 연락처: (052)290-4221